

의정활동보고서

제206회 임시회(2006. 4. 11 ~ 4. 1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
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특히 경제통합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
지 않고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의 장한 젊은이들이 2006년 세계야구경기에서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인종차별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미식축구 슈퍼볼의 영웅 하인스워드 모자의 방한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채무의 증가와 환율절상은 우리의 경제 성장기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대구·경북 경제통합 양해 각서 체결과, 오는 10월 중소도시인 「김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등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꼼꼼이 챙겨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우리지역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에 한 치의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면한 산불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제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경상북도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쁜 시기이지만 시한 내에 처리되어야 할 의안임을 이해하시어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짧은 회기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李哲雨

차 례

I. 개 황

II.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VI. 기타사항

VII. 5분 자유발언

VIII. 신상발언

부 록

□ 조례안

1.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경상북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8.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타안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06회 임시회는 2006년 4월 11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4월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4회 상임 및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4월 11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장하숙 의원)과 신상발언(임원식 의원)을 청취한 후 제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 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4월 11일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였다.

4월 18일(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을 청취한 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의결하고, 경상북도의회 제206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6-5호(2006년 3월 29일, 수)

라. 집회일시 : 2006년 4월 11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6년 4월 11일 ~ 4월 18일 (8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90회)

○ 상임위 회의 : 4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4. 11(화) 11:00 (제1차)	1. 5분 자유발언 ○ 장하숙 의원 (비례대표, 기획과학) 2. 신상발언 ○ 임원식 의원 (울진군, 경제문화) 3. 제2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4. 18(화) 11:00 (제2차)	1. 5분 자유발언 ○ 안순덕 의원 (의성군, 건설소방) 2.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 3. 2005회계연도 세입·새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주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경상북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1.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4. 18(화) 10:00 (제1차)	○ 제2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기획과학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4. 11(화) 13:00 (제1차)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4. 11(화) 13:00 (제1차)	○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4. 11(화) 13:00 (제1차)	○ 경상북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운영조례 제정안 ○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9 (404)	9 (399)	8 (352)	1 (45)	(2)	(2)	(3)	
조 례 안	소 계	8 (200)	8 (198)	7 (171)	1 (26)	(1)		(2)	
	의 회 제 안	1 (23)	1 (23)	1 (10)	(12)	(1)			
	도지사 제 출	7 (145)	7 (143)	6 (132)	1 (11)			(2)	
	교육감 제 출	(32)	(32)	(29)	(3)				
예산 · 결산		(34)	(33)	(18)	(15)		(1)		
동의 · 승인		(102)	(102)	(101)	(1)				
건 의 안		(13)	(12)	(11)	(1)			(1)	
결 의 안		(16)	(16)	(15)	(1)				
기 타 안		1 (39)	1 (38)	1 (36)	(1)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부결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학의원외 14인 발의, 2003. 9. 2, 본회의)
- ②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정기의원외 16인 발의, 2004. 9. 1, 의회운영위원회)

<철회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철회안
(김정기의원외 32인 발의, 2004. 7. 2, 본회의)
- ②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박영화의원외 20인 발의, 2005. 6. 9,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 현황 : 5건>

- ①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2. 10. 15, 행정사회위원회)
- ②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3. 9. 8, 기획위원회)
- 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④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⑤ 쌀값 하락 관련 대책 촉구 건의안
(정상진의원외 16인 제출, 2005. 12. 16, 미상정)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 회	계 류
		가 결							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9 (407)	9 (400)	8 (200)	(33)	(102)	(13)	(16)	1 (36)	(2)	(2)	(3)
의 회 운 영	1 (17)	1 (16)	1 (8)				(5)	(3)	(1)		
기 획 과 학	1 (31)	1 (30)	1 (19)		(7)	(2)	(1)	(1)			(1)
행 정 사 회	5 (121)	5 (120)	5 (84)		(33)	(1)	(2)				(1)
교 육 환 경	(55)	(55)	(40)		(13)	(1)		(1)			
농 정	(25)	(25)	(9)		(13)	(3)					
경 제 문 화	(51)	(51)	(20)		(27)	(2)	(2)				
건 설 소 방	1 (25)	1 (25)	1 (14)		(8)	(2)		(1)			
특 별	(35)	(35)		(33)			(1)	(1)			
본회의	1 (47)	1 (43)	(6)		(1)	(2)	(5)	1 (29)	(1)	(2)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51)	(15)	(24)	(14)	(33)	(9)	(9)	(14)	(12)	(21)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14)		(1)		(9)		(2)			(2)
행 정 사 회	(28)	(10)	(8)	(1)	(2)					(7)
교 육 환 경	(26)			(1)		(9)		(13)	(2)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33)	(2)	(14)	(4)			(7)			(6)
건 설 소 방	(38)	(3)	(1)	(7)	(21)			(1)	(3)	(2)
특 별 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149)	1 (149)				(2)
의회운영						
기획과학	(14)	(14)				
행정사회	(28)	(28)				
교육환경	(26)	(26)				
농 정	(9)	(9)				
경제문화	(31)	(31)				(2)
건설소방	1 (38)	1 (38)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6. 3. 3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과학 (2006. 4. 3)
경상북도지사 (2006. 3. 31)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회 (2006. 4. 3)
경상북도지사 (2006. 3. 31)	경상북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6. 4. 3)
경상북도지사 (2006. 3. 31)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6. 4. 3)
경상북도지사 (2006. 3. 31)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6. 4. 3)
경상북도지사 (2006. 3. 31)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6. 4. 3)
경상북도지사 (2006. 3. 31)	경상북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건설소방 (2006. 4. 3)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6. 2. 2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3. 9 (제2905호)
2006. 2. 2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3. 9 (제2906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6. 2.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3. 9 (제2907호)
2006. 2.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3. 9 (제2908호)
2006. 2.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3. 16 (제2909호)
2006. 2.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3. 16 (제2910호)
2006. 2.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3. 16 (제2911호)
2006. 2.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006. 3. 16 (제2912호)
2006. 2. 24	경상북도 지 사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 설립조례 전부 개정조례	2006. 3. 16 (제2913호)
2006. 3. 1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4. 3 (제2914호)
2006. 3. 1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4. 3 (제2915호)
2006. 3. 1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2006. 4. 3 (제2916호)
2006. 3. 1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6. 4. 3 (제2917호)
2006. 3. 1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4. 3 (제2918호)

3. 의원신분 변동사항

선 거 구	성 명	변동내역(사직일자)	비 고
포항시 제1선거구	손 규 삼	사 직(2006. 3. 17)	5.31 지방선거 관련
포항시 제3선거구	김 순 건	사 직(2006. 3. 17)	5.31 지방선거 관련
군위군 제2선거구	장 욱	사 직(2006. 3. 17)	5.31 지방선거 관련
구미시 제3선거구	김 석 호	사 직(2006. 3. 20)	5.31 지방선거 관련
비례대표	윤 경 희	사 직(2006. 3. 22)	5.31 지방선거 관련
영양군 제1선거구	이 호 근	사 직(2006. 3. 23)	5.31 지방선거 관련
봉화군 제1선거구	김 희 문	사 직(2006. 3. 27)	5.31 지방선거 관련
영양군 제2선거구	권 경 호	사 직(2006. 3. 31)	5.31 지방선거 관련

VI. 기타사항

○ 육군 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 일 시 : 2006. 3. 10(금) 14:00
- 장 소 : 육군 3사관학교
- 참 석 : 이철우 의장

○ 2006 청도 소싸움대회 개막식

- 일 시 : 2006. 3. 11(토) 14:00
- 장 소 : 청도 이서 서원천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포스코(포항제철) 사장단 접견

- 일 시 : 2006. 3. 15(수)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2006 나무심기 행사

- 일 시 : 2006. 3. 16(목) 10:30
- 장 소 : 경주 보문단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대구경북 경제통합 양해각서(MOU) 체결식

- 일 시 : 2006. 3. 20(월) 11:00
- 장 소 : 대구 리더스클럽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세계 물의 날 행사

- 일 시 : 2006. 3. 22(수) 11:0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 유락 실버타운 개원식

- 일 시 : 2006. 3. 27(월) 18:00
- 장 소 : 포항 장기면 산서리
- 참 석 : 이철우 의장

○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 일 시 : 2006. 3. 29(수) 18:30
- 장 소 : 산촌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재향군인회 회장단 접견

- 일 시 : 2006. 4. 3(월) 16: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6. 4. 6(목) 16:00
-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 예비군의 날 행사

- 일 시 : 2006. 4. 7(금) 10:00
- 장 소 : 영천시민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34회 보건의 날 행사

- 일 시 : 2006. 4. 7(금) 14:00
- 장 소 : 영천시민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VII. 5분 자유발언

□ 2006년 4월 11일(화) 제20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張河淑 議員 ◎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역사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지역 발전방안”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기획과학위원회 소속 장하숙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하여 열악한 산업기반과 산간내륙의 불편한 도로 교통, 여기에다 중앙정부와 도의 관심 저조 내지 개발 소외로 인하여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자치단체로서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한 도 산하기관 이전 등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가시적인 투자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북부지역은 우리나라 중동부의 내륙과 해안지역에 위치한 11개 시·군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농림어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정주여건이 미비하여 인구, 향토자원 등 지역자원의 역외 유출로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1만781km²나 되는 넓은 지역으로서 전국의 10.7%, 경북의 56.7%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지만 생활환경이나 산업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82만명으로 경상북도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절반이 넘는 53.9%가 1차산업인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

며, 면적 1km²당 도로 연장은 504m로 전국의 절반 수준이고, 재정자립도는 평균 16.5%로서 전국 평균 54.6%, 경북 평균 30%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부와 도의 철저한 외면 속에 경북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한때는 혁신적인 건설이라는 장밋빛 꿈도 꾸어봤지만 정치적 논리에 밀려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50여년간 북부지역의 경제기반을 이루면서 튼튼한 버팀목이 되었던 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마저 지역사무소로 격하되어 분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서부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남부지역에서는 방폐장을 건설하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향토자원, 넓은 땅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도와 중앙의 무관심으로 낙후가 가속되고 있는 북부지역에는 공공기관이나 도 산하기관을 배치 계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논리와 마찬가지로 경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청 및 도 산하기관을 하루빨리 경상북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다같이 잘 사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함께 이를 꼭 북부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하여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자연산업 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지역경기회생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이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 고시한 중부내륙권 광역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개발계획은 국토의 중심부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주시를 비롯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의 북부지역 4개 시·군과 강원도 충청북도의 일부 시·군이 포함된 우리나라 중부내륙지방의 11개 시·군이 상호보

완적 개발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과 새로운 산업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공동발전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토 개발계획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70개 사업에 8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5축과 6축 동서고속도로 및 중앙선 철도의 복선화 조기 추진, 철도역세권 개발사업, 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 지키기 등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북부지역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북부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옹도 경북의 혁신발전을 위해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6년 4월 18일(화) 제20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安順德 議員 ◎

의성군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안순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지난 7대 4년의 임기동안 경북도정과 지역발전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년이란 짧은 세월동안 민선 자치단체장 3선을 연임하면서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 23개 시·군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대한 족적을 남기신 이의근 지사님과 미래 국가와 지역을 책임지고 나아갈 동량지재(棟梁之材)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도 산하기관의 이전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과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 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이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이 야심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 6월24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확정·발표한 바 있고, 지방이전이 확정된 176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 시·도지사간에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공공기관의 도내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이어 11월2일에는 혁신도시 건설지가 김천시로 선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외의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발표하자 차제에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산하기관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내 일선 시·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주장이 제기되어 도 산하기관의 일선 시·군으로의 이전이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산하기관은 대구시 북구동호동에 농업기술원, 친환경생명지원연구소, 지방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사업소, 북구학정동에 농산물원종장, 가축위생시험소 그리고 2008년 1월 영천으로 이전할 예정인 북구산격동 도청청사내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7개 기관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이들 기관의 기관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원이 87명 정원에 연간 예산이 362억원, 농산물원종장 13명 18억원, 친환경산업지원연구소 18명 22억원, 지방공무원교육원 51명 48억원, 보건환경연구원 71명 68억원, 가축위생시험소 30명 30억원, 종합건설사업소 65명 358억원으로 각각 나타나 있어 만약 이들 기관이 도내로 이전된다면 막대한 생산 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당장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도 산하기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미 작년 3월11일 도지사께서 간부회의를 통해 해당 실·국의 의견을 수렴·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해 12월13일 혁신도시 입지선정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공유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2012년까지 대구시 소재 도 산하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산하기관 이전 원칙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적인 특성,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적 특성, 이전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앞서 7개 도 산하기관 중 농업기술원 만큼은 의성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성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추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성지역은 지리적으로 우리 도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임에도 아직까지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논 면적이 밭면적과 합쳐서 도합 2만650ha로서 이는 도전체 면적에 각각 8%와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세대수 및 인구수 역시 1만3,434세대에 2만9,678명에 이르고 있어 낙동강을 젖줄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기반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성은 의성마늘이라든지 고추, 황토 쌀, 옥사과, 의성 자두 등 친환경 농업의 특화작물 생산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고효율이라든지 저비용의 신유통 체계도 확립하여 선진농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기관의 업무효율성 및 능률성을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본사 인원, 지방세 납부 세액, 전체 정원과 기관 예산액을 지수화 해서 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출한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 평가 점수에서 우리 도의 발전 효과가 전국 상위권인 4위라는 점을 상기를 할 때 도 산하기관 이전도 이에 연계를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7개 도 산하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함께 농업기술원의 의성지역 이전을 다시 한 번 주장을 하면서 간략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III. 신상발언

□ 2006년 4월 11일(화) 제20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任元植 議員 ◎

울진출신 임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10만 경북 장애인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울진 군민 여러분, 저 본의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22일 한나라당경북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본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면서 과거청산의 잣대로 5년 전 변호사법위반 벌금사건을 도덕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3월23일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 현역 도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와 충격을 준 데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하면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을 하였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채희영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좀 들고 하세요.)

경상북도의회와 동료의원들 그리고 경북도청 3,800여 공직자들에게까지 본인을 도덕적으로 죄인인 것처럼 의혹을 갖도록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한나라당 경상북도당과 공천심사위원회, 그리고 김광원 국회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03년10월30일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군민으로부터 유권자로부터 당당히 검증과 심판을 받아 당선되어 도의회에 입성하여 2년 여간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장애인으로서 노인및장애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경북의 12만 장애인을 대변해 왔고 장애인관련 조례제정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현직 의원으로서 능력은 뒷전이고 과거의 상처를 칼로 난도질 하는 비열한 짓을 하면서까지 2년 전 공천

이 잘못되었다는 등 일관성 없는 일사부재리원칙도 모르는 무지한 심사위원회 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잘못되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과거 청산을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2년 전 그 때는 노동당공천이었던 말입니까?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 모두가 과거 청산의 잣대로 역사를 바로잡는 칼날을 들이 댈 때 어느 누구 하나 자유스럽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법부에도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인민재판식으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불공정 밀실공천을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하여 탈락시킨 것에 대하여 울분을 금할 수 없으며, 당에 헌신하고 공헌했던 의리를 지킨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권오을 도당위원장과 이인기 공천심사위원장 심사위원, 경북지역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당원들이 한나라당과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당원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허수아비들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은 책임당원으로서 민주정당의 주인으로서 진행되는 공천심사에 대하여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잘못되고 있는 공천에 대하여 우리 당원들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러분도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권오을 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은 민주적절차인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많은 시·군 지역에는 공천기준도 없이 밀실 낙하산공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도당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요?

김광원의원을 3선의원이 되도록 의리를 지킨 대가가 이런 것인가요? 도지사까지 출마하는 사람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민주적으로 경선을 하지 않고 밀실공천을 하여 민심과 당원의 권리를 탈취하는가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중앙당은 여성, 장애인, 공천을 특별배례토록 한다는 기준이었는데 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당기준과 도당과 공천심사위 기준 지역 국회의원 공천기준은 왜 다른가요?

방폐장 유치는 경상북도의 중대한 유치 숙원사업이었고 한나라당 경상북도당의 당론이었으므로 반대한 후보들은 당론을 위배 공천기준을 적용 탈락시켰

는데 반하여 일부 반대한 몇몇 후보들은 공천을 낙점하는 이유는 무슨 기준인지요? 방폐장관련 공천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당론을 위배하고 방폐장 반대의지로 일관하여 지역경제 몰락과 파탄을 시킨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공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오을 도당 위원장과 김광원 국회의원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로 인하여 국회의원들 자기사람 공천하려고 낙하산 밀실 공천하여 수많은 동료 우리 도의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시킨 것은 한나라당의 지역정서만 믿고 도의원들을 파리목숨 취급하는 이런 행태는 공익을 위한 공당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 사당이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천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님, 이런 짓을 하면서 정권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정권을 쟁취하여 나라의 경영을 맡은들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민들과 당원들이 의견을 무시하고 무참히 짓밟는 김광원의원이 도지사가 된들 경북이 온전하겠습니까? 도민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울진군민여러분! 저는 이제 헌신봉사하고 당에 공헌해왔던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치 못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도의원으로 출마하여 2년 반동안 의정활동 결과를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검증받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념과 열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울진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봉사정치를 실천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8건

● 기 타 안 : 1건

【조례안 : 8건】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4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중 “재원”을 “조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재원조달)”을 “(기금의 조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

제4조의 제목중 “지방채”를 “채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역개발 사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을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채”를 “채권”으로, 동조제4항중 “공채”를 “채권”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채의 매출)”을 “(채권의 매출대상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채권의 매출은 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하며, 구체적인 매출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5조제2항 “지방채를”을 “채권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 “지방채 발행대상”을 “채권 발행대상”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지방채를”을 “채권을”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지방채 매출 대상자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를 면제할 수 있다.”를 “채권 매출대상자 중 면제 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지방채”를 “채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방채”를 “채권”으로 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 이율은 2.5퍼센트 복리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채”를 “채권”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방채”를 “채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지방채”를 “채권”으로 하고, 조문중 “지방채”를 “채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제16조중 “지방채”를 각각 “채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세정회계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장 기금의 <u>재원</u>	제2장 기금의 <u>구성</u>	용어정비
제3조(<u>재원조달</u>)① (생략) 1. ~ 3.(생략) 4. <u>지방채 발행수입</u> 5. ~ 7.(생략) ② (생략)	제3조(<u>기금의 구성</u>)①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u>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u> 5. ~ 7.(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 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제4조(<u>지방채</u> 의 발행) ①..... <u>지역개발사업 지방채</u> (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생략) ③..... <u>지방채</u> ④..... <u>공채</u>	제4조(<u>채권</u> 의 발행) ①..... <u>경상북도의회</u> (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u>채권</u> 을 발행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 <u>채권</u> ④..... <u>채권</u>	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조 (지방채의 매출) ①지방채의 매출은 <u>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도, 시·군으로부터 면허, 허가·인가, 등록신고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②<u>지방채를</u><u>지방채</u> <u>발행대상</u>..... ③.....<u>지방채를</u>..... ④..... <u>지방채 매출대</u> <u>상자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u> <u>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u> <u>여 지방채 매출을 면제할 수 있다.</u>	제5조 (채권의 매출대상 등) ①채권의 매출은 <u>첨가매출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하</u> <u>며, 구체적인 매출 대상과 기준은 별표</u> <u>1과 같다.</u> 1. <u>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u> <u>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u> <u>록을 신청하는 자</u> 2. <u>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u> <u>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u> <u>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u> 3. <u>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u> <u>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u> <u>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u> <u>계약을 체결하는 자</u> ②.....<u>채권을</u><u>채권</u> <u>발행대상</u>..... ③.....<u>채권을</u>..... ④.....<u>채권 매출대상</u> <u>자중 면제대상은 별표2와 같다.</u>	법개정에 따라 채권의 매출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조례에 상향 조정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 <u>지방채</u> 의····· ····· <u>그 이율은 규칙으로</u> <u>정한다.</u>	제6조(<u>채권</u> 의 상환 및 이율) ①····· ····· <u>채권</u> 의····· ····· <u>그 이율은 2.5퍼센트</u> <u>복리로 한다.</u>	법개정에 따라 채권의 상환및이율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조례에 상향 조정하여 관련조례를 정비
②····· <u>지방채</u> ····· ·····	②····· <u>채권</u> ····· ·····	용어정비
③ <u>지방채</u> ····· ····· ····· ·····	③ <u>채권</u> ····· ····· ····· ·····	용어정비
제7조 (<u>지방채</u> 업무의 위탁) ··· <u>지방채</u> ····· ·····	제7조(<u>채권</u> 업무의 위탁)····· <u>채권</u> ····· ····· ·····	용어정비
제8조(융자대상)① (생략) 1. ~ 2. (생략) 3.····· <u>지 방 채</u> ····· ·····	제8조(융자대상)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채 권</u> ····· ·····	용어정비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생략) ② (생략) 1.····· <u>지 방 채</u> ·····	제1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채권</u> ·····	용어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5조 (위원장 및 위원) ① (생략) ② <u>세정회계과장</u> ③ (생략)	제15조 (위원장 및 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재정과장</u> ③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
제16조 (기능) (생략) 1. (생략) 2. <u>지방채</u> 가. (생략) 나. <u>지방채</u> 다. ~ 라. (생략)	제16조 (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채권</u> 가. (현행과 같음) 나. <u>채권</u> 다. ~ 라.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

[별표 1]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대 상 별	매 출 대 상	매 출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② 1600cc " ③ 2000cc "	등록세과표의 6/100 " 8/100 "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3/100
	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2/100
	라. 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100
2. 자동차 이전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② 1600cc " ③ 2000cc "	등록세과표의 3/100 " 4/100 " 6/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5/100

대 상 별	매 출 대 상	매 출 기 준
	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100
	라. 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0.5/100
3. 건설기계등록	가. 신규등록	취득세과표의 0.5/100
	나. 이전등록	" 0.25/100
4. 기타허가 및 신고	가.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액의 0.5/100
	나. 개발행위허가중 도시지역내 토지의 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지(전·답)	m ² 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 등	Γ 시 : m ² 당 3,000원 L 읍면 : m ² 당 1,500원
	다. 토석사리 취득허가(하천법)	점용료의 5/100
	라. 골프장 등록	m ² 당 60원
5.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전액출자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청구액의 1.5/100

[별표 2]

면 제 대 상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 면제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바. 민·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 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자. 종교단체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	가. 중고자동차(건설기계포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 등록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등록. 다만, 면제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면제대상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	다. (삭제) 라. 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마. 주민 직영사업 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사.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아.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토석사리 취득허가 자.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단, 임대는 동지구 지정기간에 한함) 차.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대체취득시의 차량 및 건설기계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매출 (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함) 타.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전등록 파.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 계약 하.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4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할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내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4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를 제9조의 3으로 하고,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채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채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2909호(2006.3.16)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역개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는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9조의 2(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생략) <신설>	제9조의 3(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현행 제9조의 2와 같음) 제9조의 2(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채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채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 업무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채납자 정보 공개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와, 지방세 채납액 1억원 이상을 명확히 함.
부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신설>	부칙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현행 제4조와 같음) 제4조(지역개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는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 규정은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원자력 발전과 지하자원에 대한 시행 일자를 개정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함.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4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신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 ----- ----- ----- -----. 제5조의 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지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함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4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제2항”을“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중“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을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제9조제1항중 “ 제3조 ” 를 “ 제8조 ” 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제112조” 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의 “제96조제2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 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 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를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 본문 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를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의 품종구분 기준중 (1)비품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u>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u>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u> ④ 제2항 및 제3항- _____ <u>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u> _____.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정하기 위함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생략> <신설> ② <u>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u>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u> ③ <u>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u> _____ _____ _____ _____	○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기 위함
제9조(물품매입요구의심사) ① 주 관과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물품매입요구의심사) ① - - - - - 제 8 조 _____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58조의 _____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u>물품출납원</u>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u>물품관리관에게</u>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취득)①----- ----- <u>물품운용관 또는 물 품출납원</u> ----- ----- <u>물품관리관의</u> 사전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신 설> <신 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u>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u> 이 <u>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u> 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u>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u> 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u>물품관리관</u> 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u>기증품 수령사실</u> 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 - <u>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u> ----- ----- <u>기증품수령증</u> 을 교부함과 동시에 <u>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u>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중요물품</u> 은 정수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삭 제>	○ 영 제61조에서 정수물 품 임 을 규정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④----- ----- <u>제96조 제2항</u> -----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④----- ----- <u>제27조 제2항</u> -----	
제20조(보관책임)①재고품은 <u>물품출납원</u> 이, <u>공용품</u> 은 <u>물품출납원</u> 또는 <u>분임물품출납원</u> , <u>전용품</u> 은 <u>전용자가</u>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관책임)①재고품은 <u>물품출납원</u> 또는 <u>분임물품출납원</u> 이, <u>공용품</u> 은 <u>물품출납원</u> , <u>분임물품출납원</u> 또는 <u>물품운용관</u> 이, <u>전용품</u> 은 <u>물품운용관이</u> 지정된 경우 <u>물품운용관의</u> 지도감독을 받아 <u>전용자가</u>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물품운용관 추가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 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은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 ----- ----- -----.	○ 물품운용관 추가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 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 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은----- ----- ----- ----- ----- ----- ----- -----.	○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
② 물품출납원 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물품관리관에게 -----.	
③ 물품출납원 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의 장 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물품관리관에게 -----. ④ 물품관리관 은 ----- ----- -----.	

제25조(장부의 조제)비품관계 장 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u>별 도조제하여야 한다.</u> 다만, 기 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 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 속 사용할 수 있다. <u>〈신 설〉</u>	제25조(장부의 작성)①----- ----- <u>별</u> <u>도작성하여 한다.</u> ----- ----- ----- -----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 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u>같음한</u> <u>다.</u>	○ 용어 정리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u>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u> <u>분임물품출납원은</u>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u>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u> <u>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u> ----- -----.	○ 물품의 이동상황을 손 쉽게 관 리 하 여 정확한 수불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영 <u>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u> <u>납원의 장부검사는</u> 물품관리관 (과장이 있는 청·소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 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영 <u>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u> <u>리에 관한 검사는</u> ----- ----- ----- ----- ② <현행과 같음>	○ 물품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함.
제30조(물품출납 사무의 사고보고) <u>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u> <u>망실하였을때에는 즉시 그 사실</u> <u>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u> <u>회계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u> <u>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u> <u>다.</u>	<삭제>	○ 제22조제3항에 서 이미 규정함

[별표 1]

현행	개정안
○ 물품의 종류 (1) 비품-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가. (1) 비품 나. ①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라.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마. (2) 소모품 바.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사.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아.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자.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차.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물품의 종류 (1) 비품-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카. (1) 비품 ①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타.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4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

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 지역(광역시·군의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과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

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

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가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

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채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과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본청 및 산하기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

협 · 신설기관 · 임차 · 노후 · 협소 · 위치 부적 등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 기구 · 인력의 증 · 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 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 · 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 등 공용 · 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지사·부지사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도지사 관사
2. 2급 관사 : 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

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별 표】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본 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 · 국장실	실 · 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본 청	165.3	71.28	56.16	17.92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 ㎡/인	2.6~1.5 ㎡/인	2~1.2 ㎡/인	1.6~1 ㎡/인	1.2~0.9 ㎡/인	
상황실	도	2.64 × (과장급 이상 수 + 시장·군수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총 면적의 27%~33%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충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충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의회 청사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석 수×1.5㎡		
		회 의 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집행기관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7.2㎡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2㎡	
			직 원	직원 수×2㎡	
			방청객	방청객 수×2㎡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기준 15㎡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4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결원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4조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표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협의검토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1조(회의록)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과 여비) 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1. 총괄의견

2. 분야별 검토의견

- 토질·지반분야

- 수리·수문분야

- 기타분야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검 토 자 (인)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장 귀하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4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를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제1조중 " 지방자치법 " 을 " 「지방자치법」 " 으로, " 회기수당 " 은 " 월
정수당 "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
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③월정수당은 매월 경상북도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월 2,040,000원으로 한다.

②당해 월정수당 지급월의 의원 임기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을 삭제한다 ”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 를 “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제1조중 “ 지방자치법 ” 을 “ 「지방자치법」 ” 으로, “ 동법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15조의2 ” 는 “ 동법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제15조의3 ”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 회기수당 ” 을 각각 “ 의정활동비 ” 로 한다.

제5조중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을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으로 한다.

제13조중 “ [별지 제2호서식] ” 을 “ “ 별지 제2호서식 ” ” 으로 하고,

제15조중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 를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 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 비고 :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특실 정액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대구광역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5.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6.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단위:미불화)

구 분	의장·부의장		의 원	
철도운임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선박운임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항공운임	1등 정액		1등 정액	
자 동 차 운 임	실 비 액			
일 비 (1일당)	가등급 40 다등급 40	나등급 40 라등급 40	가등급 35 다등급 35	나등급 35 라등급 35
숙 박 비 (1야당)	가등급 205 다등급 118	나등급 149 라등급 100	가등급 166 다등급 92	나등급 120 라등급 79
식 비 (1일당)	가등급 133 다등급 72	나등급 99 라등급 61	가등급 107 다등급 58	나등급 78 라등급 49
준비금	15일미만	150	140	
	15일이상 30일미만	180	170	
	30일이상	210	195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월정수당----- -----.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의원의 회기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기수당(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기수당을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본회의(위원회의 명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조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와 의정업무수행관 관련된 출장 등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금액이내에서 지급한다. ③월정수당은 매월 경상북도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의 원격지회의 출석비는 의회 소재지로부터 시군 및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편도 60km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1일당 110,000원으로 한다. ②원격지회의 출석비는 1일 54,300원과 의회 의장이 고시한 교통운임(일비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교통운임은 출석비가 지급되는 등원과 귀향시에만 지급한다. ③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란 [별표3]의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월 2,040,000원으로 한다. ②당해 월정수당 지급월의 의원 임기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기타안 : 1건】

-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 번호	397
----------	-----

제 의 년월일 : 2006. 4. 11

제 의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1. 주 문

경상북도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경상북도교육청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9인을 선임한다.

2. 제의사유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련 경험자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나. 자치단체가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운용상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기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자 함.

3. 제의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 9인 (인적사항 : 붙임1)

- 도 의 원 (3인) : 이종철·김주연·황복희 의원
- 재무관련 경험자 (2인) : 신부일, 성정호
- 공인회계사 (2인) : 남현규, 이상혁
- 세 무 사 (2인) : 라채일, 장영일

나. 위촉기간 : 2006. 5. 22 ~ 6. 10(20일간)

※ 업무사정에 따라 검사기간 조정 또는 연장

다. 결산검사 대상

-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붙임 1]

결산검사 선임위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연 령	주 요 경 력	연 락 처	비 고
계	9인				
도의원	이종철	62세	· 제6대 도의회 건설위원 · 제7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 · 제7대 도의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011-537-7201	
	김주연	64세	· 제7대 도의회 농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011-9855-8613	
	황복희	61세	· 제7대 도의회 행정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	011-509-3588	
재무 경험자	신부일	63세	· 前.회계과 경리담당 · 前.교육사회전문위원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2004,2005)	011-9381-2833	
	성정호	61세	· 前.경상북도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 · 前.경북교육정보센터관장	016-699-8851	
공인 회계사	남현규	34세	· 안전회계법인 근무 · 달서구청 결산검사위원(2005)	016-803-3729	
	이상혁	33세	· 한경회계법인 근무 · 농림부FTA기금지원 평가단 참여 · 경기도청직원복지회 감사	016-507-7355	
세무사	라채일	47세	· 1977. 8~1999. 7 세무서 근무 · 2003. 12월 세무사 개업	011-509-4906	
	장영일	33세	· 1993. 2 경북대 회계학과 졸업 · 2004. 7월 세무사 개업	016-617-2267	

의정활동보고서(제206회 임시회)

2006. 5 인쇄 / 2006. 5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